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경제·사회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민간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제언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함.

나. 광범위한 중장기 이슈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의 특성을 감안하여 분과위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관 공동 심의·의결기구에서 민간 중심의 자문기구로 개편

- 1)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중장기전략위원회 설치(안 제1조)
- 2) 민간의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의견 개진 유도를 위해 당연직 정부위원 규정을 삭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한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민간위원들로만 위원회 구성(안 제3조제1항·제2항·제3항)
- 3)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민간 자문기구로 개편함에 따라 기존 장기재정

전망협의회, 재정전략협의회 관련 규정을 타 법령으로 이관하고, 이와
관련한 기능 삭제(안 제2조의6, 제7조, 제8조)

나.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및 조사·
연구 의뢰 근거 규정 신설

- 1) 중장기 전략의 포괄범위가 광범위한 특성을 감안하여, 전문 분야별 심층
논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6조 신설)
- 2) 중장기 이슈별 심층 분석 등이 가능하도록 전문적 조사·연구 의뢰 가능
규정을 신설(안 제7조 신설)

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위원 임기 및 회의 운영 관련 규정 개선

- 1) 업무의 연속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연임가능 규정 신설(안 제3조제4항)
- 2)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도록 하되(안 제5조제3항),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안 제5조제4항의1)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 전부개정령안

중장기전략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사항을 심의한다”를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위험요인”을 각각 “위험·기회요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각 분야별 중장기 전략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은 민간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 등)”을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를 “위원회를 대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장 모두가”를 “위원장이”로,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분기마다”를 “반기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6항) 중 “참석 대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개의(開議)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중전의 제6조·제7조·제8조·제9조는 삭제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의 수립, 원활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조정 및 이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중장기전략위원회를 둔다.	제1조(목적)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에 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내외 여건의 전망과 위험요인의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3. (생략) <신설> 4. 5. (생략)	제2조(기능) 위원회----- ----- --- 사항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 -- 위험·기획요인----- ----- 2. ---- 위험·기획요인----- ----- -- 3. (현행과 같음) 4. 각 분야별 중장기 전략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11조) 중 “기획재정부 차관보가”를 “중장기 전략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12조)의 제목 “(수당 등)”을 “(경비 지급)”으로 한다.

6. 재정지출 효율화, 세입(歲入)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재정전략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생략)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 위원회의 위원장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3. 경제·사회·재정 정책 분야

<삭제>

7.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신설>

③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② 위원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위원-----

-----.

제4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는 사람 1명

②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② (생략)

③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1.·2. (생략)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항 제2호의 위원: 10명 이상

① ----- 위원회를 대표하고 -----
-----.

② 위원장이 -----

----- 위원장-----

-----.

제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반기별로 -----
-----.

④ -----

-----.

1. 기획재정부 장관의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삭제>

2. 민간위원: 5명 이상

⑥ 위원회의 회의는 참석 대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안의 제출 및 배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참석 대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에 부칠 필요가 있는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장기재정전망협의회) ① 제2조 제1호 중장기재정전망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장기재정전망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장기재정전망 실시계획의 수립

2. 분야별 장기재정전망의 주요 전제·방법·절차 및 관련 자료 제출 등

⑤ ----- 재적위원 -----
----- 개의
하고-----
-----.

<삭제>

<삭제>

에 관한 지침의 수립

3. 분야별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종합

4.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도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장기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기재정전망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조직, 구성과 장기재정전망 실시 등 장기재정전망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재정전략협의회) ① 제2조 제6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정전략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재정전략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 지출 효율화를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세입(歲入) 기반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의 수립·추진 및 제

<삭 제>

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정전략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③ 재정전략협의회의 조직, 구성 등 재정전략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조정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조정위원회와 민간자문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삭 제>

<u>〈신 설〉</u>	<u>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위원회</u>
	<u>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u>
	<u>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u>
	<u>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u>
	<u>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u>
	<u>있다.</u>
<u>제10조 (생 략)</u>	<u>제8조 (현행 제10조와 같음)</u>
<u>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u>	<u>제9조(간사) -----</u>
<u>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u>	<u>-----</u>
<u>명을 두며, 간사는 <u>기획재정부</u></u>	<u>----- <u>중장기 전략</u></u>
<u><u>차관보</u>가 된다.</u>	<u>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고</u>
	<u>위공무원이 -----</u>
	<u>--.</u>
<u>제12조(수당 등) (생 략)</u>	<u>제10조(경비 지급) (현행과 같음)</u>
<u>제13조 (생 략)</u>	<u>제11조 (현행 제13조와 같음)</u>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	
연 락 처	(044) 215 - 4916